

서울특별시 성북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권영애 의원 대표발의)



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

서울특별시 성북구 평생학습진흥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(권영애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93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3년 9월 26일

발의자 : 권영애, 이용진, 이관우, 정기혁,
임현주, 이일준, 김경이, 진선아,
강수진, 정해숙, 경수현, 김육영,
고영옥, 정병기, 양순임, 이인순,
임태근, 소형준, 정윤주, 박영섭,
이호건, 오중균

1. 제안이유

우리구 평생학습관 명칭을 상위법과 일치시켜 주민 혼란을 방지하고, 상위법에 따라 동 단위 평생학습센터 신설하여 평생학습 활성화에 기여하며, 평생교육에 대한 요구와 필요성이 꾸준히 증가했던 장애인 및 성인문해교육 등을 추가하여 평생교육을 활성화하려 함

2. 주요내용

가. 장애인 평생교육의 기회 부여(안 제2조 3항)

나.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독능력 추가(안 제2조 4항)

다. 평생학습센터를 평생학습관으로 명칭 변경(안 제4조 등)

라. 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신설(안 제6조의2)

마. 장애인 및 성인 문해교육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·운영 지원,
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사항 추가(안 제8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평생교육법」, 「평생교육법 시행령」

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조치

다. 사전협의 : 교육지원과

라. 입법예고 : 2023. 9. 26. ~ 2023. 10. 1.

서울특별시 성북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성북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구청장은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④ 구청장은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독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제2호 중 “평생학습센터(이하 “평생학습센터”)”를 “평생학습관(이하 “평생학습관”이)”로 한다.

제6조의 제목 “(평생학습센터의 설치)”를 “(평생학습관의 설치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평생학습센터를”을 “평생학습관을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평생학습센터는”을 “평생학습관은”으로, “평생학습센터의”를 “평생학습관의”로 한다.

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의2(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) ① 구청장은 법 제21조의3에 따라 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.

② 동 평생학습센터는 주민의 근거리 학습권 보장과 지역사회 수요에 맞

는 프로그램 및 지역자원 등을 발굴·연계하여 운영한다.

제7조 중 “평생학습센터는”을 “평생학습관은”으로 한다.

제8조의 제목 “(평생학습센터의 기능)”을 “(평생학습관의 기능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평생학습센터는”을 “평생학습관은”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8호를 제9호로 하며,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의2.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·운영 지원

2의3. 성인 문해교육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·운영 지원

8. 제6조의2에 따른 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

제10조 중 “평생학습센터”를 “평생학습관”으로 한다.

제11조제1항 중 “평생학습센터”를 “제6조에 따른 평생학습관과 제6조의2에 따른 동 평생학습센터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6조의2 및 제8조의8의 개정 규정은 2024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(평생교육의 진흥) ①·② (생략) <u><신설></u> <u><신설></u>	제2조(평생교육의 진흥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<u>③ 구청장은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u> <u>④ 구청장은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독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</u>
제4조(기능)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. 1. (생략) 2. 서울특별시 성북구 <u>평생학습센터</u> (이하 “ <u>평생학습센터</u> ”라 한다)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. (생략)	제4조(기능) -----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<u>평생학습관</u> (이하 “ <u>평생학습관</u> ”이)----- ----- -- 3. (현행과 같음)
제6조(<u>평생학습센터의 설치</u>) ① 구청장은 주민이 원하는 행복한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하고 주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<u>평생학습센터</u> 를 설치·운영한다.	제6조(<u>평생학습관의 설치</u>) ① --- ----- ----- ----- ---- <u>평생학습관</u> 을 ----- ----.

② 평생학습센터는 구청장이 관
리·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, 평
생학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·운
영을 위하여 평생교육 관련 비
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
수 있다.

③ (생 략)

<신 설>

제7조(위치) 평생학습센터는 서울
특별시 성북구 관할구역 내에
둔다.

제8조(평생학습센터의 기능) 평생
학습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
을 수행한다.

1. 2. (생 략)

② 평생학습관은 -----
----- 평
생학습관의 -----

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6조의2(동 평생학습센터의 운
영) ① 구청장은 법 제21조의3
에 따라 동별로 주민을 대상으
로 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을
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
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
여 운영하여야 한다.

② 동 평생학습센터는 주민의
근거리 학습권 보장과 지역사회
수요에 맞는 프로그램 및 지역
자원 등을 발굴·연계하여 운영
한다.

제7조(위치) 평생학습관은 -----

-----.

제8조(평생학습관의 기능) 평생학
습관은 -----
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<u><신 설></u> <u><신 설></u> 3. ~ 7. (생 략) <u><신 설></u> 8. (생 략) 제10조(운영요원) 구청장은 <u>평생 학습센터</u>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생 교육사를 비롯하여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. 제11조(수강료의 징수 등) ① 구청장은 <u>평생학습센터</u>가 관리·운영하는 시설의 이용자에게 이용료 또는 수강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. ②·③ (생 략)	<u>2의2.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·운영 지원</u> <u>2의3. 성인 문해교육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·운영 지원</u> 3. ~ 7. (현행과 같음) <u>8. 제6조의2에 따른 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</u> 9. (현행 제8호와 같음) 제10조(운영요원) ----- <u>평생학습관</u>----- -----. 제11조(수강료의 징수 등) ① ----- <u>제6조에 따른 평생학습관과 제6조의 2에 따른 동 평생학습센터</u>----- ----. ②·③ (현행과 같음)
---	---